

「2025년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와 (사)인천경영자총협회는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으로 뿌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12. 31.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단시간 근로제^①, 유연근무제^②,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③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
 - ①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 ②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③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 지원내용: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업에 채용지원금 지원
- 참여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II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근로시간유연화 제도로 입사한
신규입직자 55명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	지원기간	합계
기업	70만원/월	최대 6개월	최대 420만원

○ 지급방법

- 1개월 단위로 급여이체 확인 후 지급

- (기업) 참여 신청서 상의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가능

III 자격요건

1. 기업

1-1. 기업 참여자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②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 ▶ 뿌리산업 중 반도체 조립 장비(29271102), 칩마운터(29271103)은 반도체 산업으로 지원 가능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③ 단시간 근로제^①, 유연근무제^②,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③

①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②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③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1-2 지원 제외 기업

○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참여를 제한함

-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②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⑧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2-1. 근로자 참여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둘 이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제^①, 유연근무제^②,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③으로 입사한 자

①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②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③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2-2. 지원 제외자

○ 위 근로자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제한

① 취업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③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인 자*
 - * 단시간근로 지원 대상만 해당
- ④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 ⑥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 ⑦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⑧ 재택근무자
- ⑨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 중인 자
- ⑩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자
-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IV

제출서류 안내

-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이메일(seminheo@inef.or.kr), 팩스(032.429.7111), 방문을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1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2	[서식2]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3	[서식3]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5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7	뿌리업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8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9	4대보험 가입증명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10	기업 통장사본	
11	출퇴근 기록부	전자·기계적 방법
12	급여명세서	
13	이체확인증	

[서식1] 참여신청서[기업용]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기업용)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고용형태 (해당되는 곳에 √표)	<input type="checkbox"/> 단시간 근로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로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유연근로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육아기 및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방법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인천경영자총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식1] ~ [서식5]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내 발행분) 및 뿌리업종확인 서류(공장등록증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3. 뿌리산업 관련 훈련과정 수료증 4. 4대 사회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분) 5. 근로계약서 6. 참여자 명의 입금통장사본 ♣ 지원금 신청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식6]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3. 출퇴근기록부 4. 기업 통장사본
------	---

[서식2] 기업정보 활용동의서[기업용]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동의서(기업용)

1.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참여: 신청, 지원금 신청 등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 실적·성과 평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등에 활용(사업관련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이메일, 연락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뿌리업종 확인 서류 등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신청 이전 3개월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보유·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p>운영기관은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업인 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운영기관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p>

2.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제3자(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관내 군·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이메일 · 연락처 · 4대보험 가입현황 등 사업 참여 신청을 목적으로 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p>운영기관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p>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인천경영자총협회장 귀하

[별첨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1. 주조산업 (1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4111	제철업	확대
24112	제강업	확대
24113	합금철 제조업	확대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확대
24131	주철관제조업	기존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확대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확대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확대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확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확대
24311	선철주물주조업	기존
24312	강주물 주조업	기존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기존
24322	동주물 주조업	기존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기존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확대
29230	주물주조기계	기존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확대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확대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확대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확대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확대
25931	날붙이 제조업	확대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확대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확대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확대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확대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확대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확대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확대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확대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확대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확대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확대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확대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확대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확대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확대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확대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확대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확대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확대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존

3. 열처리산업 (2)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5921	금속 열처리업	기존
29150	공업용로, 전기로	기존

4. 표면처리산업 (1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확대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확대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확대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방향제 제조업	확대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확대

4. 표면처리산업 (1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확대
20499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기존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확대
25922	도금업	기존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기존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기존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기존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기존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기존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기존
29299	금속 표면처리기	기존

5. 소성가공산업 (10)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기존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기존
24123	철강선 제조업	기존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존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존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존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기존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기존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기존
29224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기존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4132	강관 제조업	기존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기존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기존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확대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기존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기존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존
25995	용접봉	기존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존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기존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기존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기존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기존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기존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확대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확대
27216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기존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확대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확대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확대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확대
29162	승강기 제조업	확대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확대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확대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확대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확대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확대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확대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확대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확대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확대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확대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확대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확대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확대
29199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기존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확대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확대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확대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확대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확대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확대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확대
29271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기존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확대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확대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확대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존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존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존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존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기존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확대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존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확대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확대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확대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확대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확대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확대
31111	강선 건조업	기존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존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존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존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확대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기존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존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존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존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존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존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존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확대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확대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확대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 고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확대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기존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확대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확대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확대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확대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기존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확대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확대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확대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확대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확대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확대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확대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존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존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확대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확대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확대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확대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기존

8. 정밀가공산업 (3)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기존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용용 절삭기계	기존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기존

9. 적층제조산업 (1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기존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확대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확대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기존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확대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확대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기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확대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확대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확대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기존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기존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기존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기존
29291	기타종이가공기계	기존

11. 로봇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존

12. 센서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기존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확대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확대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확대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확대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존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비고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확대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확대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확대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확대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존